

안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8-665
----------	-------

제출년월일 : 2021. 8.

제 출 자 : 안산시장

□ 제안이유

- 최근 사회재난이 다양화·대형화하고 있으며,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안산시민을 대상으로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임.
- 이에 재난 취약계층 및 보험가입이 불가한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 주요내용

- 가입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보험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보험금 청구 및 피해조사,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 제정조례안 : 붙임1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2

□ 예산수반사항 : 붙임3

□ 사전예고(결과) : 붙임4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21. 6. 25. ~ 2021. 7. 15. (21일간)

□ 기타 참고사항

- 방침결정문 : 붙임5

【붙임1】

안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안산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안전보험” 이란 안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이라 한다)를 말한다.
2. “보험기관” 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개별 법령에 따른 공제회 등을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① 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의 국내 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가입 등에 제한을 두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보험료 납부방법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이후에는 시민 수 증감을 이유로 보험료를 정산하지 않는다.

② 보험기관은 계약 기간 중 증가된 시민에게 발생한 손해도 보상한다.

③ 시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가입 기관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보상 신청절차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보험금 청구 및 피해조사 등) ① 제4조의 보상범위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시민과 그의 법정상속인 또는 대리인(이하 “피보험자 등”이라 한다)은 보험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③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 등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명자료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보험기관에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피보험자 등이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보험금 지급)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6조제2항에 따라 보험금액을 자체 없이 결정하고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 ② 제6조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험기관은 지급 지연사유와 지급예정일, 보험금 가지급제도 등을 피보험자 등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보험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금 지급현황(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사유 등)을 시장에게 월 단위로 통보하여야 한다. 보험금 지급 후 보험금을 환수한 경우도 포함한다.

제8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상자가 재난 또는 사고 발생일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거나 국적 상실로 시민의 자격을 잃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 등에서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시민안전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시민안전과장 윤 충 오
	담당·팀장 직위·성명	사회재난팀장 박 순 덕
	담당자 성명·전화	김 병 주 (행정 2119)